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지 혜 박 우 현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사건의 법적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이로써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게 사법절차상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받은 후 피고인의 양형을 평균적으로 절반가까이 감경하였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을 제시받은 배심원은 제시받기 전보다 피고인의 양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시한 경우 제시 전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 가지 피해자 요인들 중 양형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소취하 이력 제시 조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성매매 경력, 피해자의 진정서 제시 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치된 조건이 처치된 그룹의 양형판단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었지만 개인 간 처치요건에 따른 영향력의 편차가 크다는 점 또한 시사되었으며, 추후 질적 분석을 통해 배심원의 양형판단 근거로써 피해자요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위해 배심원의 평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피해자요인이 법정으로 유입된다면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점차적 확대시행을 앞두고 법률 외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절차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양형기준,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성폭력, 피해자요인, 피해자유발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Tel: 031-249-9198, E-mail: suejung@hanmail.net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유명연예인의 준강간 고소사건에서는 재판중인 사건과 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아무런 제지 없이 유출되었다. 사건 정황과 직접적인 증거들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신분, 평소 언행과 이성 관계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었다. 심지어는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까지 진위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들은 높은 조회 수와 비난성 댓글을 기록했다. 만일 배심재판에서 이러한 정보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면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증거들이 아닌 법률 외적 증거들이 안전장치 없이 법정 안으로 유입된다면 우리는 이런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평결에 미칠 영향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30일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법원행정처, 2007).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도와 참심제도의 요소들을 대한국민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혼용한 모델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제도의 관료화와 폐쇄성의 억제, 인권보장에의 기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친숙성 및 신뢰의 제고 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황성기, 2004).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증거배제 결정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하며 배제되어야 하는 증거들이 법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배심원의 선입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섬세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아동이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거의 없다(이춘화, 2011) 잘못 유입된 증거들이 배심원의 평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국내연구는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판사의 문지기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법정에서 허용될 수 없는 증거들의 영향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더욱 필요해 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사건의 배심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 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지, 초범인지 등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와 배심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평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게 사법절차상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현황

국민참여재판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력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도 있다(김광준, 박미숙, 이정민, 임유석, 추형관, 황지태, 2008). 만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언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때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판 전 언론보도에 대한 영향으로 형성된 배심원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무거운 양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성폭력피해자는 사건이 외부인에

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성폭력의 특성상 배심재판보다는 판사재판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3년간 성폭력범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접수율은 강도(27.8%), 살인(23.4%), 성범죄(22.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배제율과 철회율이 높아 진행건수는 17.1%에 그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1). 배심참여재판의 성과저조는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언론 등의 관심에 대한 부담, 검사와 법관의 업무강도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점: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제도의 신뢰도 제고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상사건이 갖고 있는 범죄유형별 특성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김봉수, 2008)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을 피해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나아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재판과정 동안 받게 되는 질문에는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거나 양형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도덕성에 흠결을 내기 위한 내용들도 종종 포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강간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질문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면식일 때 이전의 성적 친밀도에 관하여 상세하게 물어보거나, 피해자의 평판에 대해 언급한다(Jennifer Temkin, 1987).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여부, 구조요청을 위해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정여부,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하여 질문하기도 한다(정현미, 2000). 이처럼 피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의 무분별한 증인신문은 재판의 본질을 흐려놓고(조국, 2002) 어렵게 법적 증인 출석을 결심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 관련 증거들이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시행이전에 반드시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판사는 재판의 문지기로서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되는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판단에 관련이 없는 법률 외적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관련 증거가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판사와 배심원의 증거판단 능력

판사는 ‘법률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례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론에 도달하며, 판결을 내리도록 기대된다. 이를테면 판사의 유무죄 판단은 구성요건과 책임성, 위법성의 3가지의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반면 배심제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대부분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거나 매우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다만 판사의 설시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건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배심원보다 더욱 정확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영문, 2008).

그러나 판사가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인 보다 나은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안영문, 2008). 예를 들어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때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증

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따로 훈련받지 않는다. 판사가 일반인보다 사실판단을 더 잘하는가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사실판단에 대하여는 직업법관이나 일반인 사이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최대권, 2004). 따라서 참여재판제도 논의에 있어서 일반인의 판단이 우수한가 아니면 직업법관의 판단이 우수한가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문이 아닌가 한다(이완규, 2008).

다만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배심원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배심원은 일반적으로 판사보다 배심원들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Leniency Bias)이 있으며 유죄판결을 내리자는 배심원들보다 무죄판결을 내리자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향이 관찰된다. 모의배심단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배심단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배심단의 최종평결은 대부분 다수의 의견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 모형이 적용되지 않아 소수가 무죄를 주장하기만 해도 무죄 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배심단 평결에서 일종의 ‘관대화’ 편향이 발생한다(최훈석, 법률신문 특별기고 2009년 7월 4일). 또한 배심원의 동정이 평결에 미칠 가능성 때문에 심정적인 호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일부러 피고인이 배심제를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김광준, 박미숙, 이정민, 임유석, 추형관, 황지태(2008)의 15건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동정심을 느꼈음을 감안할 때, 배심원들 대부분이 동정심이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미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하였으며, 배심원단의 유무죄평결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 사이의 일치 비율이 높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과 재판부의 선고형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김광준 외, 2008).

양형판단의 법률적 요인과 법률 외적 요인

양형(量刑, sentencing)은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죄목의 유무죄판단 후 유죄로 판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따르는 형의 종류와 형량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양형판단은 피고인의 죄에 대한 법적 처분으로서 양형에 대한 판단은 형사사법절차의 종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형판단은 복합적이며 역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민식, 박미랑, 2010)이다. 양형은 법적(legal)인 변수뿐 아니라, 법적 외(non-legal or extra-legal) 다 양한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법적 변수들(legal variables)이란 전통적으로 당해 범죄행위의 유형과 심각성, 피고인의 범죄경력으로 정의된다(Hagan, 1974; 이민식, 박미랑, 2010 재인용). 미국에서는 양형 판단 시 원칙적으로는 범죄경력이나 범죄의 심각성 같은 법률적 요인만이 고려되며 부당한 양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에 대응하여 비록 양형이 가이드라인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실질 합리적인(substantive rational) 또는 주관적으로 합리적인(subjectively rational)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Kramer와 Ulmer, 2009). 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들은 양형결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경력임을 발견하였고(Zatz, 2000; 이민식, 박미랑, 2010, 재인용), 일부는 인종, 성별, 연령, 사회계층과 같은 법률 외적 요인들은 법적으로 적절한 변인들을 통제하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갖는 역할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범죄자의 성별(Daly & Tonry, 1997), 연령(Steffensmeier, John & Jeffery, 1995), 인종(Kautt & Spohn, 2007) 및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D'Alessio & Stolzenberg, 1993) 등 법률 외적 요인들이 양형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이민식, 박미랑, 2010, 재인용).

피해자 특성과 피고인의 양형

Baumer와 Messner, Felson은 피해자의 과거 및 사건 당시의 행위 또는 피해자증언의 진실성 평가, 피해정도의 판단,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책임의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검찰, 배심단, 재판부의 의사결정을 일정 부분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Baumer et al, 2000). 전과, 매력, 성품, 성별등과 같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이 양형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Dion, 1972; Drout & Gaertner, 1994; 손지선, 이수정, 2007)은 법률 외적 요인들이 피고인의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도범과 살인범 같은 폭력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실업상태일 때, 더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Dawson, 2004). Baumer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의 33개 카운티에서 수집한 검찰의 2,539건의 살인사건을 조사한 결과 평판이 나쁘거나 불량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자는 다소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특성이 피고인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들(Kingsnorth et al, 1999; 이현정, 2010; LeFree et al, 1985; 이민식, 2009 재인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법적판단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인 외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법률 외적 증거들이 유입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도발과 피해자의 평판

Drout & Gaertner(1994)는 성관련 범죄의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가설(Justworld hypothesis)에 따라 범죄행위의 촉발 원인을 가해자에게 찾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찾으려는 경향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세상은 공정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달리 문제가 없는'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단지 피해자와 다르다면 나에게서는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이 있고, 피해가 명백히 타인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그 대신 범죄자로 지목되고 기소된 사람에 대해 강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정의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하였다(Rubin & Peplau, 1975).

그보다 앞서 Wolfgang(1958)은 '피해자 유발'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피해자유발은 피해자가 범죄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자만을 행위자로 보던 기존의 시선에서 피해자와 범죄자의 일련의 행동교환으로 보는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피해자 유발론(Victim Precipitation Theory)에 따르면 피고인의 법적판단 수준이 가해자의 죄질, 교화가능성, 뉘우침의 정도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 성역할 수용도, 피해당시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폭력사건에서는 종종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판단과는 관련성이 적은 피해자 관련 증거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만일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의 증거가 법정에서 유입된다면, 그것이 비록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닐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여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도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Myers, 1980; Wolfgang, 1958). 또한 피해자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도발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의 가능성을 줄였다(Albonetti, 1987; Frohmann, 1991).

사건당시 피해자의 도발과는 별개로 피해자

의 과거 성경험과 생활양식에 대한 평판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시사된다. Spears와 Spohn가 1989년 미국 디트로이트 시 웨인카운티에서 수집한 321건의 성범죄 사건기록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다른 사람과의 이전 성관계, 음주 및 약물남용 패턴, 범죄경력, 매매춘 경험, 클럽댄서나 마사지사로서 일한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 등 피해자관련특성이 검찰의 기소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의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비도덕적인 특성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ears, Spohn 1997; 이민식, 2009 재인용). 이 같은 기존연구에 따르면 배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의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경력 여부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성도덕을 문제 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의 양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재판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주어지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피해자에게 재판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다음공판기일은 언제이며, 피해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권고 사항일 뿐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기능으로서 형사사법절차의 개념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범죄자의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법절차 참여

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자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이민식, 2009). 배심제에서는 법정에서 오가는 정보들이 얼마나 생생한가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김상준, 2003),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요인에 따라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개개인이 평결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복잡하며 평결에 활용되는 증거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통계적 상황에서 주어진 피해자 조건에 따라 배심원의 양형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결의 논거를 분석하는데 기반을 닦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요인인 피해자 도발여부, 피해자의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여부, 유사성매매 경력여부, 피해자의 진술서 제출여부가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가설 1. 피해자의 도발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피해자의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여부, 유사성매매 경력여부, 피해자의 진술서 제출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3개 회사에서 모집한 일반 직장인 및 2개 대학에서 모집한 대학생과 그의 학부모들이다. 이들에게 6가지 조건의 설문지를 무선배치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20세~60세 사이의 배심원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배심원평결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246개로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06명의 설문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1에 성인 206명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의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설문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에는 배심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위한 질문, 성폭력사건의 재판 시나리오, 강간죄의 양형기준, 의견서와 진정서 형태의 지문, 종속변인 측정을 위한 질문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시나리오의 기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25세, 남)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키스를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다. 이 시나리오는 독립변인인 ‘피해자의 도발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피해자의 도발이 포함된 시나리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도발 없음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이 키스를 했을 때 저항한 것으로 조작되었다.

한 사람의 참가자가 읽는 설문지에는 의견서나 진정서 형태의 독립변인이 조작된 지문이 3가지 중 한 가지가 포함된다. 이것은 각각 피해자의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에 대한 의견서,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에 대한 의견서,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N=206	빈도(%)
성별	남	100(48.5)
	여	106(51.5)
연령	20대	105(51.0)
	30대	43(20.9)
	40대	26(12.6)
	50대	32(15.5)
학력	중학교이하졸업	2(1)
	고등학교졸업	74(35.9)
	대학교졸업	113(54.9)
	대학원졸업	14(6.8)
	무응답	3(1.5)
월 소득수준	소득없음	32(15.5)
	100만원이하	23(11.2)
	101만-200만원	45(21.8)
	201만-300만원	43(20.9)
	301만원이상	59(28.6)
	무응답	4(1.9)
결혼상태	미혼	134(65.0)
	기혼	64(31.1)
	이혼	4(1.5)
	사별	3(1.5)
	무응답	1(0.5)
자녀수	없음	137(66.5)
	1명	14(6.8)
	2명	48(23.3)
	3명이상	6(2.9)
	무응답	1(0.5)

그리고 피해자의 진정서이다.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 조건에서는 피해자가 이전 강간피해를 입고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며 1심 공판 도중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증거는 변호사 측으로부터 의견서 형식으로 제시된다. 피해자의 유사성매

표 2. 처치된 조건에 따른 배심원 배치

	피해자의 도발 유무	
	도발 없음	도발 있음
고소취하 이력	N=35 (32)	N=36 (33)
유사성매매경력	N=32 (28)	N=31 (23)
진술서 제출	N=37 (33)	N=35 (29)

※ 괄호 내 숫자는 각조건 별로 처치 전후 모두 무죄를 판단한 인원을 제외 했을 때의 N값임

배 경력은 피해자가 3개월 간 '키스방'에 종사한 사실로, 변호사 측으로부터 의견서 형식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정서는 피해자가 강간당시의 감정과 이후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형식으로 제시된다.

시나리오로 조작된 독립변인인 '피해자의 도발 유무'와 추가로 제시되는 지문으로 조작된 독립변인인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 '유사성매매 경력', '피해자의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치된 배심원의 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설문지의 마지막은 피해자의 도발여부,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 유사성매매 경력, 피해자의 진술서 제출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제한 없이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를 위하여 2012년 3월~8월까지 사전조사를 마친 후 수정된 최종 설문지를 2013년 1월~2월까지 진행한 후 자료의 코딩을 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심원은 주어진 설문지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입한 뒤 피해자 도발여부로 조작된 시나리오를 읽게 된다. 이후에는 강간죄의 양형기준이 제시되고, 피고인에 대한 평결을 1차로 측정

하게 된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개인 내적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조건이 주어지기 전 평결을 사전 측정한 것이다. 이후에 의견서나 진정서 형태의 피해자 관련 조작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각각 피해자의 고소취하 이력에 대한 의견서,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에 대한 의견서, 그리고 피해자의 진정서 이다. 배심원은 이를 읽고 난 뒤에 제시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2차 평결을 하게 된다. 즉 한 사람의 참가자는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피해자 조건 3가지 중 하나의 조건에만 노출되게 되며, 측정은 노출 전과 후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평결은 몇 년 몇 개월을 줄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개월 수를 최종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즉, 1년 1개월의 양형을 부과하면 13개월이므로 13으로 코딩하였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어서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양형판단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학력, 월소득, 결혼여부, 자녀수가 포함된 것이다. 이어서 유죄와 무죄를 판정하는 경향성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유무죄에 따라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하였다.

배심원이 된 대상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 후 주어진 조건을 읽고 한 번 더 양형을 판단한다. 따라서 각 피해자요인에 따라 2(처치 전후)×2(도발유무)의 구성으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통계 패키지 SPSS 18.0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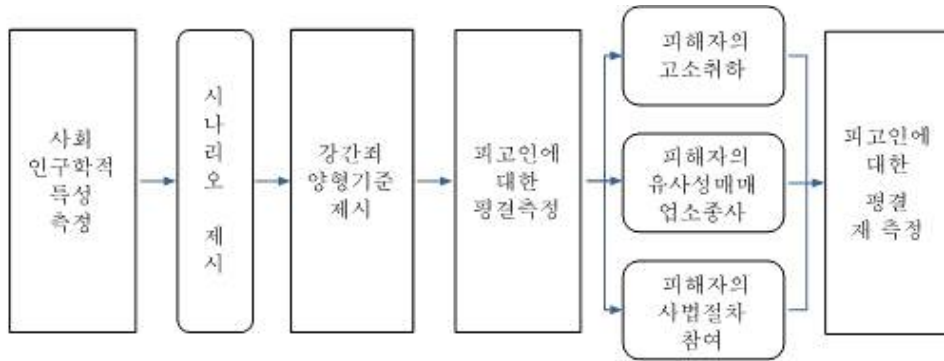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결 과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건에 대한 사전판단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요인에 따른 처치로 인한 차이와 피해자의 도발여부에 따른 차이이다. 따라서 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학적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 자녀유무에 따른 양형판단의 차이비교를 실시하였다. 결혼상태는 이혼과 사별의 빈도가 낮아 미혼과 기혼으로만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자녀수의 경우에도 자녀수로 집단구분이 어려워 자녀유무로 구분하였다. 이분형 변수인 성별, 결혼상태, 자녀유무는 독립표본 t검증을, 나머지 변수들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판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나타나는 양형 판단의 차이는 순수하게 처치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빈도 차이

본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가 성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간사건이라는 점에서 유무죄판단에 있어 배심원의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피해자 요인 조건이 제시되기 전에 사전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참가자는 총 28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무죄를 판단한 빈도에 분포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도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4.645, p<.001$).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무죄판정을 한 경우가 23명으로 전체 무죄판정의 82.1%에 달했다. 여자는 5명(17.9%)만이 무죄판정을 내렸다. 유죄를 부여하는 빈도도 전체 유죄판정 중 101명(56.7%)이 여자로 남자 77명(43.3%)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시나리오와 같은 강간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여자에 비해 남자가 피고인에게 무죄판정을 내리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요인 및 도발유무에 따라 처치전후의 차이에 관한 비교

본 연구에서 참가자의 양형판단은 피해자 요인을 제시 받기 전과 후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심지어 최초에 유죄를 판단한 참가자들도 견해를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참가자들 중 총 13명이 처음에 유죄를 판단했다가 피해자 요인을 제시받은 이후에 무죄로 견해를 바꾸었다. 13명 중 7명은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 제시조건이었고, 6명은 유사성매매 경력 제시조건

이었다. 비록 전체 참가자 중 일부이지만 이들은 명백히 제시된 피해자 요인의 영향으로 유무죄의 판단을 바꾸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요인의 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적은 숫자로 통계적인 시사점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피해자의 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나 유사성매매 경력이 제시 되었다는 것만으로

양형만이 아니라 유무죄의 판단 자체를 바꾸었다는 점은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들이 제시될 경우 배심원의 편향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염두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서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발여부, 피해자요인 3가지에 따라 처치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각

표 3. 도발여부, 피해자여부, 처치전후의 다변량 검정 결과

피해자요인		값	F	p	η^2	
고소취하 이력	처치전후	Pillai의 트레이스	.093	6.473	.013	.093
		Wilks의 람다	.907	6.473	.013	.093
		Hotelling의 트레이스	.103	6.473	.013	.093
		Roy의 최대근	.103	6.473	.013	.093
	도발유무	Pillai의 트레이스	.013	.855	.359	.013
		Wilks의 람다	.987	.855	.359	.013
		Hotelling의 트레이스	.014	.855	.359	.013
		Roy의 최대근	.014	.855	.359	.013
유사성매매 경력	처치전후	Pillai의 트레이스	.278	18.837	.000	.278
		Wilks의 람다	.722	18.837	.000	.278
		Hotelling의 트레이스	.384	18.837	.000	.278
		Roy의 최대근	.384	18.837	.000	.278
	도발유무	Pillai의 트레이스	.002	.086	.770	.002
		Wilks의 람다	.998	.086	.770	.002
		Hotelling의 트레이스	.002	.086	.770	.002
		Roy의 최대근	.002	.086	.770	.002
진정서	처치전후	Pillai의 트레이스	.178	13.030	.001	.178
		Wilks의 람다	.822	13.030	.001	.178
		Hotelling의 트레이스	.217	13.030	.001	.178
		Roy의 최대근	.217	13.030	.001	.178
	도발유무	Pillai의 트레이스	.006	.385	.537	.006
		Wilks의 람다	.994	.385	.537	.006
		Hotelling의 트레이스	.006	.385	.537	.006
		Roy의 최대근	.006	.385	.537	.006

조건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요인이 총 세 가지 존재하므로, 각 요인별로 처치 전후와 도발여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초 유죄를 판단했던 참가자가 처치 후에 무죄를 판단한 경우가 존재하여 이러한 무죄의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고, 처치 전과 후 모두 무죄를 판단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처치 전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참여자는 총 28명이었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는 28명을 제외한 총 178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 조건별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인원은 표 2에서 괄호내의 값과 같다. 분석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에는 각 조건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발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피해자 요인들과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도발유무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요인의 처치 전과 처치 후의 양형에는 세 조건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소취하 이력조건에서는 양형의 평균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F(1, 63)=6.473, p<.05, \eta^2=.093$).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에 대한 진술이 제시된 조건에서도 양형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F(1, 49)=18.837, p<.001, \eta^2=.278$). 반면에 피해자의 진정서가 제시된 조건 하에서는 양형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다($F(1, 49)=18.837, p<.01, \eta^2=.178$). 고소취하 이력은 양형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하여 9.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표 4. 각 조건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피해자요인		도발유무	M	SD	N
고소취하 이력	처치전	도발무	93.34	89.818	32
		도발유	105.97	221.634	33
		합계	99.75	168.846	65
	처치후	도발무	59.67	77.876	32
		도발유	33.85	24.254	33
		합계	46.56	58.318	65
유사 성매매 종사경력	처치전	도발무	99.96	128.031	28
		도발유	61.78	72.023	23
		합계	82.75	107.249	51
	처치후	도발무	80.00	127.304	28
		도발유	44.35	50.419	23
		합계	63.92	100.950	51
진정서	처치전	도발무	165.55	283.243	33
		도발유	86.97	124.242	29
		합계	128.79	225.242	62
	처치후	도발무	174.24	281.252	33
		도발유	99.28	129.238	29
		합계	139.18	224.912	62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여부는 양형이 줄어드는 현상을 2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진정서 제시 조건은 양형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17.8%의 설명력을 보였다. 설명력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여부는 법적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여부는 실제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결과상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이력과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는 피해자의 고소취하 이력이 더 크게 보여 지지만, F값 자체는 오히려 유사성매매 경력여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처치 전후의 차이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소취하 이력에 대한 차이 값이 더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고소취하 이력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의 폭이 더욱 다양하고, 대상마다 더 강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약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개인 간에도 처치요건에 따른 영향력의 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처치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력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다 덜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되는 것으로, 추후 질적 분석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법적판단이 피해자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고 특히 피해자의 도발여부, 성폭

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여부, 유사성매매 경력여부,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Baumer et al, 2000, Dion, 1972; Drout & Gaertner, 1994; 손지선, 이수정, 2007)을 통해 시사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법률 외적 요인들이 피고인의 법적 판단에 대하여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도발유무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양형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해자의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을 제시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좀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여부도 피고인의 양형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양형판단을 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직업이 피해자의 고소취하 이력 보다는 덜 영향을 미쳤다. 배심원에게 본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준거로서 피해자의 직업은 거리가 더 먼 요인으로 판단되어진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다소 미약하다 하더라도 법적증거로 허용될 수 없는 피해자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법정에서 유입되어 배심원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넷째,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한 조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섯째, 통계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배심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Haxton(1985)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내가 안했다(오인), 2. 성폭력은 없었다(거짓말), 3. 내가 했지만 그녀도 동의했다(동의), 4. 이 증인은 신뢰도가 낮다(신용성 없음)(Haxton, 1985).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 전혀 관련이 없어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거나 혹은 실수로 법정에서 유입될 수 있다.

성폭력피해의 경우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성폭력관련 공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과연 신뢰할 만한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피해자의 이전 고소취하 및 합의내용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소를 했을 것이라는 논거를 통해 피해자의 신뢰도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력이나 도덕성 등 범죄판단에는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지만 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의심하도록 하는 증거들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시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유사성매매종사 경험이 피해자의 부도덕성과 관련되어 피고인의 양형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 여부나 유사성매매 경력여부는 사건을 판단하는 데 관련이 적은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만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단 한명의 배심원이라도 이러한 증거를 피고인 양형결정의 고려요인들로 판단하게 된다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이민식, 박미량, 2010).

피해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판단을 해야 하는 배심원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 감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지를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배심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생생한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배심원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결국 피고인의 양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배심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지를 밝힐 때 피고

인에 대해 더 높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떠올리고 재인식하고 정리하는 과정동안 피해를 회복하게 된다(Judith. H. 2007).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작업은 반대로 피해경험을 부정하면도 계속해서 반추하게 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 또는 심문할 때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 유무를 고려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며, 증인 지원관을 두어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법절차 참여보장은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서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주체로서의 피해자를 재발견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요인들을 피해자요인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 법적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써는 거리가 멀거나 배제되어야 하는 피해자 관련 증거가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법정 에 유입되는 증거들에 대한 판사의 문지기 역할에 대해 고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법적 증거들의 배제판단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배심원그룹의 양형도의를 거쳐 도출된 양형과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실제 재판과정과 달리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매우 드라마틱한 범

적 공방과정을 담지 못했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지만, 배심원 개개인이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사고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유사성매매 경력여부'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해친 것 때문인지, '피해자의 성도덕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 한 것 때문인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법정외의 상황을 그대로 답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려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인차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 내적 설계를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양형도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실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하는 연구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피해자요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전 범죄경력이나 사회적 지휘 등 피고인 요인과 배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인지 및 강간신화 수용도 등 심리적 특성에 따라라도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 국 (2002).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저스티스, 69, 178-191.
김상준 (2003).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광준, 박미숙, 이정민, 임유석, 추형관, 황지태 (2008).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1(143), 1-486.

김봉수 (2008).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피해자학연구, 16(1), 277-298.
법원행정처 (2007).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2010). 서울: 법원행정처
손지선, 이수정 (2007). 가족 살해의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1-17.
안영문 (2008). 당신이 판사. 부산: 산지니.
이완규 (2008).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이재상 교수정년기념논문집. 서울: 박영사.
이민식 (2009). 피해자관련 요인과 양형: 폭력범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7(2), 109-131.
이민식, 박미량 (2010).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양형에 있어서 법적 요소와 범외적 요소의 영향. 형사정책, 22(2), 209-231.
이춘화 (2011).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3(1), 65-90.
이현정 (2010).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정현미 (2000).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8, 162-200.
최대권 (2004). 국민의 사법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45(3), 119-140.
최훈석 (2009). 배심단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법률신문 특별기고, 2013년 12월 10일 검색,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801&articleclascd=A10400&articleseq=1>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운동 1~12차 자료집 모음.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보통의 경험. 서울: 이매진
황성기 (2004). 특집 2: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

- 의 헌법적합성. *법과 사회*, 26, 123-143.
- Albonetti, C. A. (1987). Prosecutorial discretion: The effects of uncertainty. *Law & Society Review*, 21, 291-313.
- Baumer, E. P. Messner, S., Felson, R. (2000). The Role of Victim Characteristics in the Disposition of Murder Cases, *Justice Quarterly*, 17(2), 281-307.
- Dawson, M. (2004). Rethinking the Boundaries of Intimacy at the End of the Century: The Role of Victim Defendant Relationship in Justice Decisionmaking Over Time. *Law & Society Review*, 38, 105-38.
- Dion, K. (197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valuation of children's trans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2), 207-213.
- Drout, C. E., Gaertner, S. (1994). Gender differences in reactions to female victim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3), 267-277.
- D'Alessio, S. J. and Stolzenberg, L. 1993.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sentencing of the traditional offender. *J. of Criminal Justice*, 21, 61-77.
- Daly, K and Tonry, M. 1997. Gender, race, and sentencing. *Crime and Justice*, 22, 201-252.
- Frohmann, L. (1991). Discrediting victims'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Prosecutorial accounts of case rejections. *Social Problems*, 38, 213-226.
- Hagan, J. (1974).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An assessment of a sociological viewpoint. *Law and Society Review*, 8, 357-383.
- Kingsnorth, R. (1999). Sexual Assault: The Role of Prior Relationship and Victim Characteristics in Case Processing. *Justice Quarterly*, 16, 275-302.
- Kramer, J. H., Ulmer J. T. (2009).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 Lafree, G. D., Reskin, B. F., Visher, C. A. (1985). Jurors' responses to victims' behavior and legal issues in sexual assault trials. *Social Problems*, 32(4), 389-405.
- Myers, M. A. (1980). Personal and situational contingencies in the processing of convicted felons. *Sociological Inquiry*, 50(1), 65-74.
- Rubin, Z., Peplau, L. A.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3), 65-89.
- Steffensmeier, D., John K., Jeffery U. (1995). Age differences in criminal sentencing. *Justice Quarterly* 12, 701-719.
- Spohn, C. C., J. Spears (1997). The effect of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 on sexual assault case processing decisions. *Justice Quarterly*, 13(4), 649-679.
- Temkin, J. (1987) *Rape and the Legal Process*, London: Sweet & Maxwell
- Woifgang, M. (195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Philadelphia: Univ. of Penn Press.
- Zata, M. (2000). The convergence of race, ethnicity, gender, and class on court decisionmaking: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Criminal Justice*, 3, 503-552.

1 차원고접수 : 2013. 12. 22.

수정원고접수 : 2014. 03. 03.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5.

Factors of Victim Influence Sentencing Judgment by the Jury on Sexual Harassment Cases

Lee Ji Hye

Woo Hyun Park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This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an effect of extralegal factors such as victim's characteristics, etc. except for legal factors necessary for sentencing judgement of sexual violence on jury verdict. Thus, it intended to prepare empirical base to examine possibilities of unfair treatment of justice procedure for victims or the accused. The contents showed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jury reduce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by about the half averagely after they knew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ve a career of charge withdrawal for previous sexual violence. Second, jury who was suggested by victims' previous work in similar prostitution tended to redu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Fourth, if suggesting a peti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Among the three factors of victims, what makes the most effect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was a condition of charge withdrawal. Next, there were working in similar prostitution and suggestion of victim's petition in order. However, general influence was existing by treatment, but it implies that strength of influence was different by treatment condition among them. It should be necessary to examine verdict of jury for the utilization of victim factors as a ground of jury's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re will be possibilities to make an effect on jury's legal judgement if extralegal victim factors are introduced to the court. In the futur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prepare procedural standard which can exclude extralegal factors before the gradually expanded execution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Key words : sentencing guidelines, a jury system, korean jury trial, sexual violence, victim main, victim precipitation